

민원 사무명	행위허가(용도변경, 개축·재축·대수선, 파손·철거 등)				
민원내용	·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, 파손·철거 등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				
근거법규	·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				
처리부서	건 축 과	협조부서 (기 관)	소방서, 건설과, 환경보호과 등	처 리 기 간	10일
현 장 조사사항	· 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	접수 ⇒ 서류검토 및 협의 ⇒ 현장확인 ⇒ 처리 ⇒ 증명서 발급 (위임전결 : 과장)				
구 비 서 류	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청서 1부 2. 행위에 따른 관계서류(평면도, 동의서 등)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건축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				
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소 방 서 환 경 보 호 과 건 설 과 기 타	소방관계 법규 적합여부 정화조활용가능 여부 하수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기타 관련 사항 협의			
후 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 차	시 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사용승인 면허세 납부	신 청 서 준공검사필증 신 청 서 건축물관리대장	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승인후 30일 이내 건축물대장기재정리후 등기정리	건축과 세무1과 등기국	
수수료 및 제반경비	· 면허세 : 면적에 의한 부과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· 사용검사 신청, 건축물대장 변경 및 등기 정리				